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83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얼리업체 집적지인 종로1~4가 일대(서울의 45.5%, 전국의 22.2% 차지)를 2010년 1월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나. 주얼리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 업체 간 협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15년 7월, 2관-'17년 6월 개관)를 건립하여 주얼리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25.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무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 심사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897백만원('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기관에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얼리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2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 주얼리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기획·운영
- 소공인, 창업자 등을 위한 제작-유통 원스톱 공간 운영
- 기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구 분	개 관	위 치	규모	연면적(m ²)	주요 사무
1관	'15. 7.	종로구 서순라길 89-8	지상 2층 지하 1층	338	<산업지원 및 감정지원> - 주얼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 - 경영컨설팅 및 라이브러리 운영 - 주얼리 감별 및 분석지원
2관	'17. 6.	종로구 서순라길 83	지상 2층 지하 2층	449	<전시 및 공유공간 운영> - 쇼룸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으로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 - 포토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운영

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25. 3월~7월) : 85.46(우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25. 7. 18) : 적정

3.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2(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 석수현 (☎2133-8776)